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재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954
----------	------

발의년월일 : 2024. 4. 12.
발 의 의 원 : 이재화,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지만, 박종필,
박창석, 윤권근,
이성오, 이재숙,
전경원, 조정구,
허시영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및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않는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 6. (생략)
- ② ~ ④ (생략)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

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전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 4. (생략)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 ⑧ (생략)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생략)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생략)

2. ~ 5. (생략)